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가사휴직 사유를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시행을 위하여 임용권 위임, 경력경쟁채용 및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채용 계약 시마다 반복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한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나.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1)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

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령(제13조의3 제4항)내 용어를 함께 변경하고자 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 및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안 제9조의3)

1) 조문명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조문내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라. 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안 제19조의4)

1)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조부모·부모 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었던 것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휴직 가능하도록 가사휴직 사유 확대됨에 따라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마.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1)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으므로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짧은 기간에 대해 채용 계약을 하고 있어 채용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한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의 채용 신체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바. 질병휴직 운영 「공무원임용령」 준용(안 제8조제4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연장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바, 질병 휴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자 함

사. 위임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의5, 제9조의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게”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제5호의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9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
겸임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

제3조제5항제1호 중 “법 제29조의2제7항”을 “법 제29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간제교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 면제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은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본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을 준용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 등)”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2가목 후단 중 “특별채용”을 각각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특별채용하는”을 “채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채용 중”을 “채용 중”으로,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을 “교육전문직원 채용”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 · 공립 학교의 교원 중 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있는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간 전직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사립학교의 폐교 ·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조의3의 제목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같은 항 중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는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는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같은 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5제2항 중 “법 제29조의2제5항”을 “법 제29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6제1항 중 “법 제29조의2제6항”을 “법 제29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채용된”으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을 “돌볼 수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을 “돌볼 수 밖”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제5호의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
1 ~ 4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9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검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 ~ 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 제 3. (생략) ⑥ (생략)	1. 법 제29조의2제8항 -----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① (생략) <신 설>	제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제교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 면제에 관하여는 「공무

② (생략) <신 설>	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은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을 준용한다.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생략)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등) ① ----- 경력경쟁채용 등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생략)

3의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채

용

3. (현행과 같음)

3의2. -----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
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
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
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
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
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
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
별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
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
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
함되어야 한다.

나. (생략)

4.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가.

채

용.

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 경력경쟁채용 -----
----- .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
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
채용

<신 설>

1. ----- 채
용-----
----- 채용하는 -----

2. ----- 채
용 중 교육전문직원 채용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다수인을 대
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
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
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
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
조제1항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
원 중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
는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
문직원간 전직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

제9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
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
별채용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
의에 앞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
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
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
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
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
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
다.

④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
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
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여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
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

① ----- 경
력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교원경력경
쟁채용위원회(----- “경력경쟁
채용위원회”라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위원회-----

-----.

③ 경력경쟁채용위원회----- 경
력경쟁채용 -----

-----.

④ 경력경쟁채용 ----- 경력
경쟁채용위원회-----

-----.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생략)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 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⑤ -----
----- 경력경쟁채용위원회 -----

⑥ -----
----- 경력경쟁채용위원회 -----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9조의2제6항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 법 제29조의2제7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채용된 -----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⑤ ~ ⑨ (생략)

제19조의4(가사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
----- 대통령령 -----

1. ----- 돌보는 -----

돌볼 수밖-----

2. ----- 돌보는 -----

----- 돌볼 수
밖-----